



제2012-2454-83호

# 안 전 인 증 서

**BARTEC GmbH**

Max-Eyth-Strasse 16, D-97980 Bad Mergentheim Germany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품 목

Control and Signalling device adapters

## 형식·모델(용량·등급) / 인증번호

05-0003-00\*\*/\*\*\*\*

(Ex e II) / 12-KB4BO-0082U

## 인 증 기 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 인 증 조 건

### 1. 제조공장

본 인증서는 아래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 제조공장명 : BARTEC GmbH

· 소재지 : Max-Eyth-Strasse 16, D-97980 Bad Mergentheim Germany

### 2. 제품개요

· 제품정격 : Pushbutton, Position selector 등이 있으며, 기타 제품은 매뉴얼 참조

### 3. 인증범위 : 본 인증서는 위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사용주위온도 : -55℃ ~ +70℃

· 폭발성 위험가스 지역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IP54등급을 만족함

### 5. 인증(변경)사항 : 없음

### 6. 그 밖의 사항 : 사용설명서 참조

2012년 2월 29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 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 [Notification for recipient(license holder)]

1. 본 인증서는 기재된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적용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product meets the applied safety requirements and is manufactured from the manufacturing factory that appears on this certificate)

2.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In case of the following articles, this safety certificate may be terminated or cancell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In case of being certific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thods)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In the case that the properties of certified products related with safety are not suitable for safety requirements)

3)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심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In case of refusing, avoiding or disturbing surveillance without reasonable excuse)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 안전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In the case of the following articles, this safety certificate shall be reapplied and reissued for revision)

1)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Losses or damages to this certificate)

2) 제조자,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 기재내용의 변경 (Change in contents of the certificate such as factory name, factory address, President(CEO), etc)

4.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The recipient(license holder) of safety certificate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s)

1) 안전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marking of safety certification and other certification requirements)

※ 안전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 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안전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It will be punished by the ACT if 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before the issue of the certification)

5.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5에 의거 년 1회 확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The Recipient(license holder)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hall receive regular factory surveillance, not less than once per year, under Paragraph 5 of Article 34 of the Safety and Health Law for Industries and Paragraph 5 of Article 58 of the notice for the same law)

연락처 : 기계부품센터, Tel 860-1540, Fax 860-1539

(Contact point : Machinery Components Center Tel +82-2-860-1540)